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9. 16(금) 10:00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 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9. 6.
- 라. 회부일자 : 2022. 9. 6.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808호 2022. 2. 3.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삭제함(안 제1조)
- 나.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의무화함
(안 제13조 본문)
- 다. 운영비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808호 2022. 2. 3.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1)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삭제함(안 제1조)
- 2)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의무화함
(안 제13조 본문)
- 3) 운영비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규정에 따라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보조를 의무화하고 지원 범위를 신설 규정함으로써 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전문개정 2016. 2. 3.]